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O ) / 공개( O ), 비공개( )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721000-100053-01

혁신정책 / 2025-004

#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6. 3.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연구개발  
기간 : 2025.2.11 ~ 2026.2.10) 과제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3.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황지호 인)



연구책임자 : 안 소 희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권 명 화 연구위원

김 덕 용 연구위원

박 현 우 위촉연구원

서 현 정 위촉연구원

외부연구진 : (주)혁신경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OC0305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기획·운영 효율화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영문	Policy planning and systems development for regional science&technology innova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안소희		직위	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419		휴대전화				
		전자우편	ash@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1170504			
연구개발기간	2025. 2. 11. - 2026. 2. 10. ( 12 개월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83,500							283,5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김덕용		직위	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437		휴대전화				
		전자우편	deokyong@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1848579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3월 9일

연구책임자: 안 소 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황 지 호)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 요약 서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OC0305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기획·운영 효율화						
연구개발과제명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5. 2. 11 ~ 2026. 2. 10 (12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283,500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3,500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의 안정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과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예산 연계 사업 지원						
	전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계획 기반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과학기술 분야 포트폴리오 마련 지원</li> <li>○ 17개 시·도 대상 지역 역량 수준을 고려한 '26, '27년도 중점 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및 상세 기획 지원</li> <li>○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및 시행령 입법 지원</li> <li>○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25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6년도 시행계획 수립</li> </ul>						

연구개발성과	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발의 ②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3개 지역) 및 지역별 2027년도 중점 신규사업 기획 지원 등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 기반 혁신전략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li> <li>○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R&amp;D사업을 중앙부처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중앙-지역 협력체계 강화 및 R&amp;D 예산 투입 효율성 강화</li> <li>○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및 시행령을 통한 지역과학기술 혁신의 법적 근거 확보</li> <li>○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정책·사업 관리</li> </ul>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1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논문 게재	학술 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법령 변경	정책 활용	안전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국제 협력	(정책) 홍보	포상 ·수상	기타	
			1			3						1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지역과학기술		지역R&D		지역과학기술 혁신법		지역혁신정책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영문핵심어 (5개 이내)	Regional Science & Technology		Regional R&D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		Regional Innovation Policy		Regional S&T Innovation Plan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5

## 제2장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제정 추진

제1절 필요성 및 기본방향 .....	9
제2절 주요국 혁신 동향 .....	11
제3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14

## 제3장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부처-지자체 협업과제 추진)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	25
제2절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중점 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	27

## 제4장 지역 자율R&D 정책 방향 제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39
제2절 지역 R&D 현황 및 문제점 .....	44
제3절 해외 지역 혁신성장 성공 사례와 시사점 .....	47
제4절 '지역 자율 R&D' 사업의 전략적 추진 .....	49
제5절 '지역 자율 R&D'예산의 제도화 추진 .....	57

참고문헌 .....	69
------------	----

붙 임 .....	75
-----------	----

[별첨]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 촉진에 관한 법(안)(국회 발의 본) .....	75
---	----





제 1 장

연구개요





## 제 1 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이탈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전례 없는 소멸 위기 직면
  - 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경제기반 및 사회 인프라 동반 붕괴로 구조적 소멸 위기 심화\*
    -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절반 이상(57%)을 차지하는 130개이며,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 진입(국가데이터처, 2025)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일자리·교육·의료 등 핵심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층의 지방 이탈이 구조적으로 지속
    - ※ '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이 있는 사람 19만 명 중 청년층은 13만 명으로 69.6%를 차지(국회미래연구원, 2025)
-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
  - 고도화된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 생명과학 등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과학기술 역량이 지역발전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부상
    - 또한 차세대 통신기술과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 디지털 헬스,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 AI 기반 스마트 제조 등 융복합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주도 경쟁 시대에서 지역별 혁신 역량 격차 해소가 국가 과제로 대두됨
    - 정부는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와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측면의 보완 필요
      -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8),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24.3) 등
    - 주요국들도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혁신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 (미국) 지역혁신엔진(Regional Innovation Engine), (중국) 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 실시방안 등
-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필요
  -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의 안정적·효과적 추진과 혁신역량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성 증대

- 지역에서 기획·추진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정책·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주도 정책·사업의 완성도 및 이행 가능성 제고
- 과학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별 발전 요구를 고려한 현행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의 중간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이 요구
  -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불균형과 분산된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이행
  - 경제·사회환경 변화 및 정책 기조\*를 반영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본격 추진 및 성과 점검
    - \* 국정과제 49번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제6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수적임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 연구의 목표

- 지역 기반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구축과 지역 정책 개발 및 제도적 토대 확립
  - 현행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지역별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자립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역 과학기술 혁신 계획 수립 지원 및 재정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의 성과 분석과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개선점 도출

### 2) 연구의 내용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및 동법안 시행령 제정 추진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제정을 위한 지역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법안 보완 및 시행령 제정(안) 마련
    -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26.2.9, 의안번호 16657)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및 '26, '27년도 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 인천, 울산, 제주에서 추가 수립 중인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컨설팅 및 확대 추진
    - 3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전략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컨설팅
    - 2개 희망 지역(경기, 경남) 대상 추가 수립 지원
  - '26년도 예산연계 후보사업 후속 지원 및 17개 시·도 대상 '27년도 신규사업 제안 기획 컨설팅
    - '26년도 예산연계 후보사업 후속 지원 및 최종 연계사업\* 선정
      - \* 6개 지역(강원,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충남) 후보사업 중 최종 2개 지역(강원, 전남) 사업을 '26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5.4.30)
    - '27년도 지역별 신규사업 제안 지침 마련 및 제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 추진
      - ※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지역별 신규사업의 발굴·검토를 통해 예산과 연계하는 체계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심의·의결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중점 신규사업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구분	추진 내용	일자
2차·3차 컨설팅	3개 지역(인천, 울산, 제주) 과학기술혁신계획 대면·서면 컨설팅	'25.1.20, 2.24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지원	'25.4.30
추가 수립 지원	2개 지역(경기, 경남) 과학기술혁신계획 서면 컨설팅	'25.12.11~12 '25.12.16~18
지역별 신규사업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 '26년도 예산연계 후보사업 상세기획 점검회의	'25.1.23
	'26년도 예산연계 후보사업 심층컨설팅	'25.2.11~19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지원	'25.4.30
	지역별 '27년도 중점 신규사업 제안	'25.10.31
	지역별 '27년도 중점 신규사업 사전검토 및 소관부처 검토(1차)	'25.11.10~17
	지역별 '27년도 중점 신규사업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1차)	'25.12.3~10
	지역별 '27년도 중점 신규사업 전문가 컨설팅	'26.1.21~27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sup>1)</sup>
  -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25년 사업 추진실적 수합 및 분석
  -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26년 추진방향 종합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또는 서면심의 예정('26 초)
  
- 지역 자율 R&D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
  - 지역 R&D 현황·문제점 진단 및 해외 지역 혁신성장 성공 사례 분석
  - 지역 R&D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향 설정
  - 지역 자율 R&D 예산 관리 체계 및 블록펀딩 예산의 지역별 배분 기준 제시

1) 해당 내용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26.3 예상) 후 별도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함



제 2 장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제정 추진





## 제2장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제정 추진

### 제1절 필요성 및 기본방향

#### □ 지역 혁신의 중요성

- 수도권 중심의 인구·자본 집중화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청년 인구의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 심화

\* GRDP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 ('95) 48:52 → ('15) 50:50 → ('23) 52:48

- 최근 과학기술은 산업·경제 구조 대전환 시대의 지역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며 관심이 확대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정책을 적극 추진 중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지역기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 투자

(영국) Catapult center 중심 산학협력 R&D 및 중소기업 지원

(독일) 지역 기반 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 75개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활용한 모듈형 센터로 지역 혁신 추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 우수 인재 등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충이 시급

#### □ 현행 법률의 한계

- 과학기술기본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 관련 법률은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원칙, 일부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

법률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구축, 성과 확산 및 산업화 촉진,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6조	지역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 확충, 지역균형발전 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

- 지역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여러 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계·협력도 제한적

\* 집적단지 육성(연구개발특구법 등 개별법),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기술 분야 개별법), 산학연협력·사업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산학연협력촉진법 등)

- 또한, 정책과 사업 추진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사업 집행에 한계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주요 계획 수립의 주체는 정부

□ **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

- 지역 주도로 지역 특화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적 혁신역량 구축 및 중앙부처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분산되어 있던 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사업의 지속성 및 이행 가능성을 확보
  -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책임성 강화
- 지역 스스로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 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가능
  - 지역에 필요한 R&D 분야에 대하여 기획-집행-성과관리 전주기를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의 마련에 대한 요구 확대

**〈 제정(안) 기본방향 〉**

- ◇ (추진체계) 지역 고유의 특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 ◇ (혁신주체)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 연구기관·대학 육성과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연구 역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 (기반조성) 연구개발 혁신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 연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현

## 제2절 주요국 혁신 동향

### □ 미국 : 지역별 전략기술 혁신 거점을 구축·확산하는 분권형 R&D 생태계

#### ○ 경쟁형 보조금 제도를 통한 자율적 예산 운용과 엄격한 모니터링

- NSF·EDA 등 연방 부처는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역 컨소시엄의 자율적 프로젝트 제안을 유도
- 중앙정부는 자금 배분, 성과 관리에 집중, 지역은 전략 및 실행의 자율성 확보

#### ○ 단계적·성과 기반 보조금 체계

- 준비단계(전략 기획 및 비전 수립)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중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연장·축소·종료를 결정함으로써 책무성과 유연성의 균형 유지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단계 구조를 취하며, 약 절반의 사업만이 실행단계로 진입함

※ BBBRC는 60개 컨소시엄 중 21개 컨소시엄이, RTIH는 31개 허브 중 12개 허브가 2단계 진출

#### ○ 대규모·장기 투자 구조

- 5~10년에 걸쳐 수천만~1억 달러 단위의 대형 보조금이 제공됨

\* RIE는 최대 12년간 \$175M 규모의 보조금 지원 가능

#### ○ 지역 컨소시엄의 포용성 요건

- 지역 소수민족, 소수자 기관, 농촌·저소득 지역의 참여를 법령으로 명시하여, 단순 경제 개발을 넘어 포용적 혁신정책으로 확장

### □ 영국 : 지역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혁신전략을 설계·집행하는 공동설계형 R&D 모델

#### ○ 경쟁형 보조금 기반의 자율적 집행

- 중앙정부는 산업·지역 정책 등 전체적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이 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제안하도록 유도

#### ○ 지역 파트너십 중심의 공동 거버넌스

- 기업, 대학, 지방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이 전략 수립, 우선순위 및 자금 배분 원칙을 공동으로 결정
- 민간 경제인이 의장을 맡아 로컬 펀딩 패널을 운영하고, 전략 수립에도 참여함으로써 공동 설계 및 공동 집행 실현

○ 단계적·성과 기반 보조금 체계

- 기획단계(Seedcorn)와 실행단계(Full Stage)로 구분하여, 중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연장·축소·종료를 결정함으로써 책무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유지

□ 프랑스 : 독립 법인형 클러스터 기반 산학연 협력 R&D 모델

○ 별개 법인격을 갖는 클러스터 기반 협력 네트워크

-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회형(association loi 1901) 클러스터 구성

○ 자율적 운영과 주기적 재인증

- 각 클러스터가 자체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R&D 프로젝트를 기획·제안·집행
- 국가가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재인증·통폐합 결정

\* 2002년 67개 클러스터가 지정되었고, 주기적인 평가 및 개편을 통해 현재는 55개 클러스터 운영

○ 산업정책형 R&D 모델

- 단순 연구비 지원이 아닌 산업화 및 시장 진출 중심의 실용적 R&D 추진
-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

□ 독일 : 예산 획득형 지역 R&D 자율 모델

○ 예산 획득형 자율 모델

- 지역 단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스스로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경쟁 공모로 확보하고, 선정 후에는 해당 전략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
- 중앙정부는 기본 자금지원과 성과평가에 머물며, 지역 단위 클러스터에 운영상 자율성이 상당히 위임된 형태

○ 민간·지방정부 재원의 필수적 투입

- 기업과 지방정부 재원의 공동 매칭이 요구됨

\* Spitzencluster-Wettbewerb는 5년 간, Cluster4Future는 최대 9년 간 연방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동일 기간 기업·지방정부 재원의 공동 매칭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일본 : 대학 중심의 예산 획득형 지역 R&D 자율 모델

○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 거점 조성

- 대학이 중심이 되어 기업·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거점) 구성

※ COI-NEXT는 지역 대학이, J-PEAKS는 지역의 중핵대학·특정분야 강점대학이 중심이 됨

-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백캐스팅형 R&D를 추진

## ○ 단계적·성과 기반 지원 구조

- 매년 진도·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중간평가, 마일스톤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연장·축소·종료를 결정함으로써 책무성과 유연성의 균형 유지
- PD·PO가 중심이 되어 매년 진도·성과를 모니터링

## □ 중국 : 지방 책임형 지역 R&amp;D 모델

## ○ 중앙의 전략적 관리 및 지방의 전면적 집행

- 중앙정부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승인·감독, 성과 평가에 집중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기획, 공모하며 과제 평가와 자금 집행 전 과정을 주도
- 중앙의 관리·감독 기능과 지방의 실행·운영 기능이 명확히 분권화된 구조

## ○ 경쟁형 공모와 성과 기반 평가 체계

- 지방정부가 공모·선정·집행 전 과정을 총괄하며,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형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음
- 중앙정부는 연차별 자가평가 및 중앙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

## ○ 예산의 단순화 및 자율운용 강화

- 중앙정부가 공동 재정사무로 지방정부에 예산을 이전·배정하고, 지방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시행방안을 수립·집행
- 성과·마일스톤 중심 총액지원 방식으로, 세목 간 조정 및 일부 항목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운용 자율성 확대
- 금지·제한 항목만 열거하는 네거티브형 관리방식 채택

### 제3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주요 내용

- ◇ 지역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하며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관리
- ◇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연구개발사업은 특화된 평가 수행이 가능
- ◇ 시·도지사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요조사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
- ◇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 근거 마련
- ◇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

#### 1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 (지역별 혁신계획)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혁신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을 수립·추진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타 시·도 계획과 중복·충돌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정 요청 가능
- (투자 전략)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5년 단위)을 수립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등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시·도지사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공표 가능
- (지역별 추진체계)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는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시·도지사 소속, 30명 이내)를 설치하고, 정책·사업 기획 및 관리를 전담하는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

####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및 지원

- (공공연구기관 육성)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지역 내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을 선도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중점기술 개발·사업화, 기업 기술문제 해결,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수행
- (대학·산학연 협력)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협동·융합연구, 인력·정보 교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 등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내 혁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 수립, 교육훈련·재교육 촉진,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역 내 취업·창업 지원 및 우수 인재 유치·정착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③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 (정주여건 개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주택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지역문제 해결)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규제 개선 및 정보 관리)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지표로 관리

##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주요 조문

### ①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시·도가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역과학기술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
  - \* (주요내용) 계획의 목표, 중점기술 분야 설정, 투자 전략,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지역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 지역 내 연구성과의 확산,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
  - 지역혁신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 후 제출
  - 과기정통부는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 정부 정책 및 타 지역의 정책과 중복·상충하는 경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과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제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 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자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및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
- 시·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를 설정
  -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별도로 관리
  -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사업별·지역별로 파악하여 관리, 이를 매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과제와 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가능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사업별·지역별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한 지역연구개발 사업을 지정
-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연구사업에 특화된 성과 평가 방안 마련 및 평가 수행
- 시·도는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자체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의 과학기술 수요 대응을 위하여 초광역 협력연구개발사업 추진 가능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지역과학기술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초광역권의 지식·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해 지역과학기술인 및 지역과학기술주체 간 다양한 협력활동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하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에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7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 과기정통부는 시·도와 협의하여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 활용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지원
  - \*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역 기업 기술문제 해결, 지역 사회문제 해결, 지역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연구시설·장비 구축·활용 등
-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이공계인력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채용 등 소재지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 시·도지사는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제17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p>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 거점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p> <p>⑤ 지역거점연구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거점연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계획 및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6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 시·도는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도 내 산학연 간의 개방·협력 촉진 및 학·연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정보 등의 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창업 등 지원, 연구개발인력 교육 등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 개방·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획·수행하거나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통합 지원 가능

○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이 지역 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

####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p>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li> <li>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3.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li> <li>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li> <li>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li> <li>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li> </ol>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본 조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

**7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시·도는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도 내 산학연 간의 개방·협력 촉진 및 학·연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정보 등의 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창업 등 지원, 연구개발인력 교육 등
- 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 시·도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 과기정통부는 시·도와 협의하여 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정부는 시·도지사의 관련 정책 추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제1항에 따른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역과학기술 관련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 통계 및 조사는 부재
  -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역R&D실태조사 등
  - 조사·분석 자료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여 통계의 신뢰성이 낮고 지자체 간 현황 비교·분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 ※ 특히, 지자체의 경우 R&D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산 및 투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정책·사업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통계 및 조사·분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제기
- 지자체에서 생산된 과학기술 관련 정보,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도 낮은 상황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①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체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자료 수집 및 지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 제 3 장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 □ 추진배경

- (현황) 그 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도 제출
  - (지역별 종합계획)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 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

#### 〈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시작 시기 〉

기 간	1차('00~'04)	2차('05~'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수립 지역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천('04~'08), 대구	대전, 제주, 울산	경기, 충남	부산, 세종, 광주

- (지역별 시행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과제별로 매년 각 시·도별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을 제출
- (한계)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가 불명확하여 선언적 의미의 계획에 그침
  - 지방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지역의 역할이 주도적이기보다 단순 집행 수준에 그침
  - 더욱이 지역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지역 간 산업·기술 특화가 어렵고, 지역의 역량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제한적
  - 자체 예산과 연계한 일부 지역도 대부분 산업(기업) 지원, 기반 조성 등에 배분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까지 연계는 미비

⇒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화 분야와 전략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 추진

〈 기존 지역별 계획과의 차별성 〉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혁신계획
범위	지역 과학기술 전반	지역 중점 과학기술 분야 중심
구체성	선언적 의미의 정책 및 사업 현황 제시, 세부이행 방안 미흡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육성할 기술 분야 및 지원계획 제시
연계성	중앙부처 주요 계획들을 정책환경의 요소로 제한적 반영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과 관련성 및 연계방안 명시

□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 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지역의 과학기술 중심 혁신을 위한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개발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 지역혁신전략 수립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추진전략 1-2-①\*에 따라, 지방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지역별 역량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화 분야 도출 및 발전전략 수립
  -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체계 정립
  -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R&D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집행, 성과관리하는 선순환 체계 확립·운영을 추진
  - 중앙정부는 지역의 발전전략 수립과 이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 중앙정부,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연계체계 〉

구분	중장기 계획(5년 단위)	시행계획(매년)
중앙정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지침)	종합계획 시행계획 (주요내용 정리 및 컨설팅)
	↓	↑
지자체	지자체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계획)	혁신계획 실행계획 (지자체별 추진계획 및 투자전략)

## 제2절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중점 신규사업 기획 컨설팅

### 1 주요 절차 및 추진내용

□ 주요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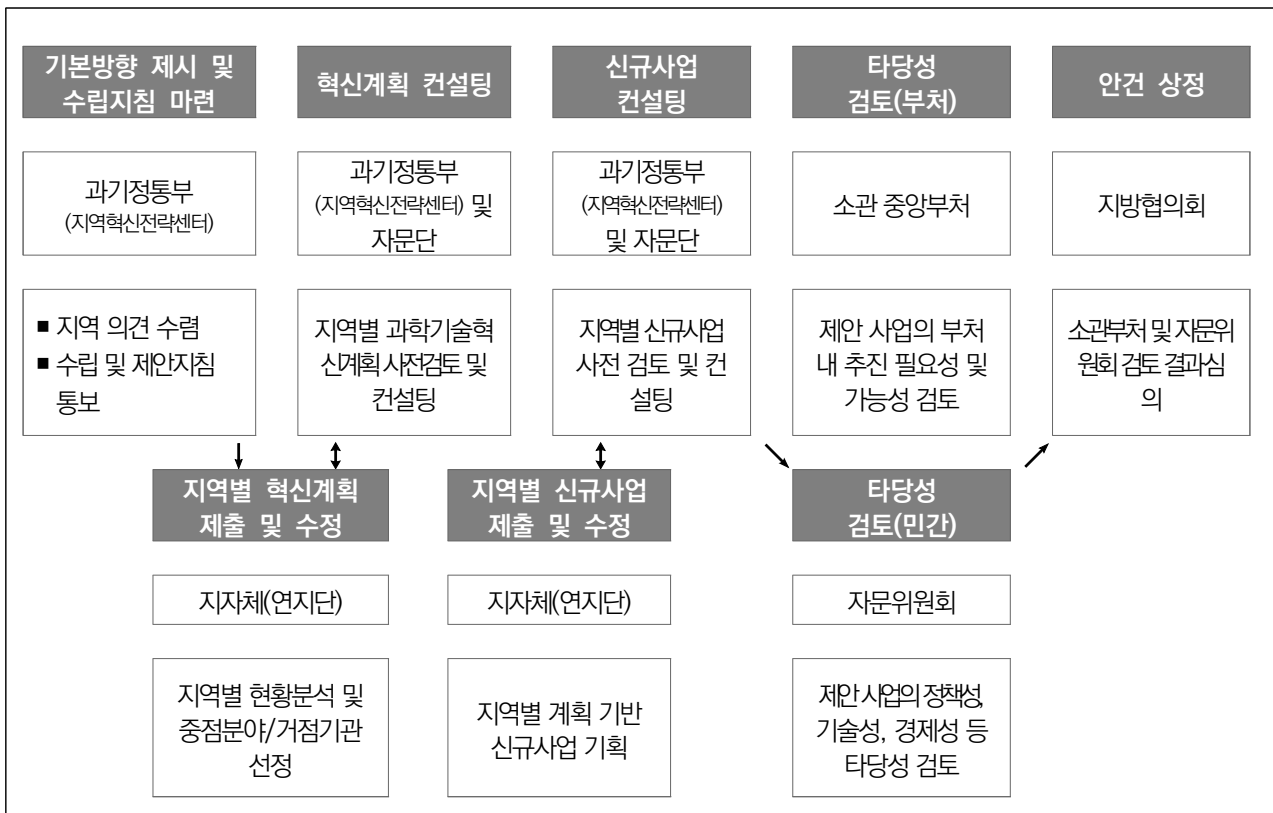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 그림에 따라 지침 마련-계획 수립 및 컨설팅-사업 기획의 절차로 추진

- 지역 의견 수렴에 따른 수립 지침에 기반하여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주도로 지역별 환경 및 역량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별 전략 및 사업을 기획

- 지역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및 KISTEP 지역혁신전략센터가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산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 지역R&D, 기술 전문가로 구성

- 최종적으로 지자체별 혁신계획 및 신규사업을 소관부처 및 자문위원회가 검토·조정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핵심신규사업 기획 절차 〉

□ 주요 수립 절차별 세부 추진내용 및 실적

○ 3개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초안 작성 및 검토

- 과학기술혁신계획 추가 수립 지역을 위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안) 통보('24.5.9)
-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3개 지역(인천, 울산, 제주)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 연구기관 도출 결과 수합(~'24.10.4)
- 제출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센터 및 컨설팅 자문단의 사전 검토 수행('24.10.5~8)
-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대상 사전 검토 결과의 공유('24.10.15)

○ 3개 지역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개선 및 대면 컨설팅

- 수정본에 대한 정책연구센터 및 컨설팅 자문단의 1차 대면 컨설팅 수행('24.10.16) 및 결과의 지자체 통보('24.10.21)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2차 수정본 수합(~'24.11.6)
- 지역별 비전·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및 사업 검토를 위한 대면 및 서면 컨설팅\* 추진  
\* 인천, 울산, 제주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2차 대면컨설팅('25.1.20), 3차 대면컨설팅('25.2.24) 및 서면검토 수행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최종본 제출 및 안건 상정

- 3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최종본 제출(~'25.2) 및 지자체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과학기술혁신계획 심의 추진('25.3)
-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25.4.30) 안건\* 상정 지원  
\* 제1호 안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개요 및 지원방안(안)」

○ 추가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초안 검토

- 과학기술혁신계획 추가 수립 지역을 위한 수립지침 전달('25.9)
- 과학기술혁신계획 추가 수립 2개 지역(경기, 경남)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 연구기관 도출 결과 수합(~'25.11.10)
- 제출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센터 사전검토('25.11.17~21) 및 사전검토 결과 통보('25.11.24)
-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본에 대한 컨설팅 자문단의 서면 컨설팅 수행('25.12.11~12/12.16~18)
- 지자체 및 연구개발지원단 대상 컨설팅 자문단 검토 상세의견 결과 공유('25.12.23)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2차 수정본 수합(~'26.1.19)
- 추가 지역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개선 및 대면 컨설팅
  -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본에 대한 과기정통부·KISTEP 및 컨설팅 자문단의 서면 컨설팅 수행('25.12.11~12/12.16~18) 및 결과의 지자체 통보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중점 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도출 2차 수정본 수합(~'26.1.19)
- 지역별 2026년도 예산 연계 후보 사업 컨설팅 및 연계 사업 선정
  - '26년도 예산 연계 후보 사업(7개)\*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 예산 연계 후보 사업 상세 기획 점검회의 개최('25.1.23)
    - \* 과기정통부(강원,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산업부(충남), 농식품부(경북), 우주청(부산)
    - ※ 예산 연계 후보 사업의 기획현황 및 향후 계획(지자체),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계획(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설명 후 소관부처 의견청취 및 토의
  - '26년도 예산 연계 후보 사업(6개)\* 지역별 심층 컨설팅 개최\*\*
    - \* 대전·강원('25.2.11), 전남·부산·대구('25.2.13), 충남('25.2.19)
    - \*\* 경북은 소관부처와 협의 후 예산 연계 후보 사업 심층 컨설팅에서 제외
  - '26년도 예산 연계 사업 선정(강원, 전남) 및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지원('25.4.30)
    - ※ 제2호 안건 「지자체 '25년 예산 연계 사업 추진계획 및 '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26년도 예산 연계 사업 예산 요구 및 반영 추진('25.6)
- 지역별 2027년도 중점신규사업 제안 검토 및 컨설팅 추진
  - 지역별 2026년도 중점 신규사업 제안 지침 마련 및 지자체 통보('25.7.11)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기반 2027년도 중점 신규사업 제안 수합\*(~'25.10.31)
    -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제출
  - 제출된 신규사업에 대한 과기정통부·KISTEP 사전검토 및 사전검토 결과 통보('25.11.18)
  -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한 2027년도 중점신규사업 제안 수정본 수합(~'25.11.21)
  - 사전검토 의견 반영 사업기획안에 대한 소관 부처 1차 검토('25.12.3~10) 및 검토의견 지자체 통보(~'25.12)
  - 지역별 2027년도 중점 신규사업에 대한 과기정통부 ·KISTEP 및 기술·정책분야 자문단

대면 컨설팅\*('26.1.21~27) 및 서면 컨설팅 수행\*\*

\* 1.21(수) : 강원 / 1.22(목) : 부산, 충북

1.26(월) : 대구, 전남 / 1.27(화) : 전북

\*\* 1.27(화)~29(목) : 광주 / 2.2~2.4(화) : 전북, 세종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구분	회의명	개최일자
2차·3차 컨설팅 및 서면검토	3개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컨설팅	'25.1.20, 2.24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지원	'25.4.30
⇒ 산출물 : ①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검토 및 컨설팅 결과 ② 3개 지역별 중점과학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중점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 결과 ③ 3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최종본 및 안건		
지역별 신규사업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 예산연계 후보사업 상세기획 점검회의	'25.1.23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연계 신규사업 컨설팅	'25.2.11~19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지원	'25.4.30
⇒ 산출물 : ① 지역별 2026년도 예산연계 후보사업 검토 및 컨설팅 결과 ② 지역별 예산연계 후보사업 제안 검토 결과 ③ 2026년 예산 연계 사업 최종 선정 결과 및 안건		

## 2

## 주요 수행 결과

##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

- (지역 역량 및 환경 분석)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 과학기술 자원, 관련 R&D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이 강점 또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산업 분야 도출
  - ※ 정책 환경 및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지자체 정책방향 간 연계성 분석 병행
  - (산업 현황 분석) 산업별 비중 및 변화 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주력산업별 주요 기업 현황,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와 정합성 등 분석
  - (과학기술 역량 분석)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현황 및 성과, 지역별 주요 R&D사업 현황 및 중점 투자방향 등을 분석
- (중점 과학기술 분야) 기술·산업 분석 결과, 지자체의 정책방향, 국가적 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 집중 육성할 분야 설정(2개 이내)
  - \* (주요지표) 집적도, 특화도, 성장률, 지역기업 연계성(이상 정량), 정책 부합성, 사업 연계성, 지속 가능성, 미래 활용 가능성(이상 정성)
  -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기술 분야 육성 필요성과 육성 전략을 제시
  - 수도권 및 타 지역 대비 성장 가능성과 비교우위, 타 지역 분야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등을 반드시 제시
    - \* 유사한 분야의 경우 세부 분야 차별화 방안 내지 타 지역과 협력 전략 고려
- (거점연구기관)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중에서 선정(2개 이내)
  - \* 출연(연)(분원 포함), 4대 과기원 등 특정(연), 전문(연), 지자체 자체 연구기관 등
  - 기관의 역량, 자원 및 주요 연구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거점연구기관의 연구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시
    - \* 중점 과학기술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유망 산업
- (유망 과학기술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차원에서 육성을 추진하는 분야 중 중점과학 기술분야 육성·발전과 연계되거나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의지를 가진 분야를 제시(2개 내외)
  - 선정 근거로써 정책적 의사결정 외에 지역에서 수행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제시
    - \* (예)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인프라, 산업 및 기업, 관련 사업, 특허 등을 활용한 지역경쟁력
  - 해당 분야의 장기적 육성을 통한 지역 및 국가 차원 기대효과 제시

- (비전 및 추진전략)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거점연구기관과 더불어 지역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추구하는 비전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 목표는 중점과학기술 분야별로 정량화가 가능한 대표 성과지표 2개 이내 제시
  - 과학기술혁신은 중점과학기술분야와 연관성을 가진 산업 현장 지원(단기)\*-기술 고도화 및 산업 확산(중기)-미래성장동력 창출(장기)의 전략을 구성
    - \* 단기의 경우 지역주력산업 분야 설정 가능
  - 생태계·기반 조성은 중점과학기술 분야 외에 지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생태계(제도, 거버넌스 등) 조성 전략 제시
- (중점추진과제 및 정책 수단)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유망과학기술분야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 또는 정책 수단을 제시
  - 추진전략을 구체화한 중점 추진과제 및 부처·지자체 사업 등 정책수단 간 연계구조 구체화
  - 중점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점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제시
  - 거점연구기관 중심 산학연 협력체계를 활용한 지역 연구·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 계획 등 제시

□ 지역별 혁신계획 검토 및 컨설팅

- (목적) 지역별 역량 분석,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선정 등에 대한 자문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보완 의견 제시

※ 혁신계획 수립을 희망한 3개 지자체(인천, 울산, 제주)를 대상으로 추진

〈 지역별 혁신계획 컨설팅 자문단 위원 명단 〉

성명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구분	소속 및 직위
김경훈	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종복	학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손종태	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현권	학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정의영	산	아인혁신컨설팅 대표	한민규	산	(주)로운인사이트 본부장
한응규	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홍찬영	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주요 내용) 역량 분석 및 중점기술 분야, 거점연구기관 선정(안) 검토·조정

- 역량 분석과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간 정합성 검토
- 중점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선정의 적절성 및 선정 근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 의견 제시
- 중점기술 분야의 지역 간 중복성 검토 및 필요시 차별화, 조정 제안

〈 지역별 현황분석 검토 및 컨설팅 항목 〉

분류		주요 항목
지역 역량 및 환경 분석		중앙-지자체 간 지역혁신정책 관련성
		지역 산업구조 변화 진단과 지역과학기술정책과의 적합성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 소재한 혁신주체(산학연) 현황 및 성과 진단과 중점과학기술분야 집중 분석
중점과학기술 분야 및 거점연구기관 설정	중점과학기술분야	중점과학기술분야(대분류 기준 2개 이하)의 적절성 및 정량·정성 지표 해석의 명확성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소분류 기술의 비교우위 및 성장성 진단 및 제시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소분류 기술에 대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및 연계·협력
	거점연구기관	역량 및 환경분석 부분과 SWOT 분석의 논리적 연계를 통한 거점연구기관 선정
		선정된 거점연구기관의 중점과학기술분야 연구 수행 지속가능성(인력, 관련 사업 등)
		거점연구기관에서의 수행될 연구의 지역 내 산업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주요 결과) 3개 지역 모두 2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제출하였으며, 분야별 단일 거점연구기관을 선정·제출

〈 지역별 중점 기술분야 및 거점 연구기관 〉

지역	중점기술 분야, 거점연구기관 및 추진방향
인천	<p>① 생명과학-레드바이오 - 연세대학교 K-NIBRT (한국형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딥테크·사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산학연병 연계 클러스터 조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li> <li>• 벤처기업 대상 AI 기술 융합 R&amp;D 지원으로 레드 바이오산업 선도 및 앵커기업의 글로벌 바이오 리더기업 성장 환경 구축</li> </ul> </li> </ul> <p>② 기계-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 뿌리기술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내 협력 생태계 강화를 통한 로봇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 관련 인프라(기업육성 종합센터, 시험인증센터) 조성으로 스타트업·성장기업 등 단계별 맞춤 지원과 투자확대</li> <li>•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선도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li> </ul> </li> </ul>
울산	<p>① 이차전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이차전지 및 고에너지 밀도 기술력 확보와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고안전성 배터리팩 제조 기술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전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27년 예정)</li> <li>•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과 울산 이차전지 얼라이언스 구축·운영 및 인력양성 추진</li> </ul> </li> </ul>

지역	중점기술 분야, 거점연구기관 및 추진방향
	<p>② 제조AI - ETRI 울산지능화융합연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산업 자율제조 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데이터센터 유치 및 산업용 소버린 AI 혁신 허브 기반 마련</li> <li>•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 연계 및 대기업 기술이전 협력체계 구축</li> <li>•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li> </ul> </li> </ul>
제주	<p>① 농림수산식품 - 제주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특화 청정자원 활용 산업의 벨류체인 강화를 위한 농림 수산식품분야 융복합 R&amp;D 고도화 및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산학연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로 지역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R&amp;D 추진체계 확립 및 혁신인재 양성</li> <li>• 기술개발 및 연구 성과가 지역 소재 산업에 연계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 간 협업 집중 지원</li> </ul> </li> </ul> <p>② 에너지/자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선도 지역특화형 에너지 대전환 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에너지 산업 최대 현안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출력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장·활용 기술개발</li> <li>• 신학연 연계 현장 특화형 전문인력양성 및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촉진</li> </ul> </li> </ul>

□ 지역별 '26년도 예산연계 후보사업 컨설팅 및 연계 사업 선정

- (목적) 소관부처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충남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의견 제안
- (주요 내용) 지역별 예산 연계 후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최종 예산 연계 사업 선정
  - '26년도 예산 연계 후보 사업(7개)\*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 예산 연계 후보 사업 상세 기획 점검회의 개최('25.1.23)
    - \* 과기정통부(강원,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산업부(충남), 농식품부(경북), 우주청(부산)
    - ※ 예산 연계 후보 사업의 기획현황 및 향후 계획(지자체),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계획(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설명 후 소관부처 의견청취 및 토의
  - '26년도 예산 연계 후보 사업(6개) 지역별 심층 컨설팅 개최\*
    - \* 대전·강원('25.2.11), 전남·부산·대구('25.2.13), 충남('25.2.19)
    - \*\* 경북은 소관부처와 협의 후 예산 연계 후보 사업 심층 컨설팅에서 제외
- (결과) '26년도 예산 연계 사업 선정(강원, 전남) 및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 상정 지원('25.4.30) 및 예산 반영 추진
  - \* 「지자체 '25년 예산 연계 사업 추진계획 및 '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2호 안건('25.4.30)

□ 지역별 '27년도 중점 신규사업 검토 및 컨설팅 주요 결과

- (목적) 12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화 산업·기술을 반영하여 제안한 2027년도 중점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의견 제안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內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지역별 2027년도 중점 신규사업 제안 지침(7.11)에 따라 제출(~10.31)된 각 1개 신규R&D사업

○ (주요 내용) 지역별 신규사업(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방향 제시

- 지방협의회 산하 자문위원회, 소관부처 추천 전문가 및 사업군 PD 등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의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수정·보완 의견 제시
- ※ '27년 지역별 중점 신규사업에 대한 대면컨설팅(1.21~27) 및 서면컨설팅(1.27~29/2.2~4)을 추진하여 제안 사업의 완성도 제고

○ (타당성 검토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검토기준 등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역별 중점신규사업 컨설팅 주요 항목 〉

구분	주요 항목
정책성	〈사업 성격〉 • 기 구축된 지역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을 지양하고 있는가?)
	〈사업 추진 필요성〉 • 해당 지역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이슈의 해결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술성	〈성과지표 설정 근거〉 • 사업의 목적, 내용 및 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구성과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사업 수행 가능성〉 • 제시된 수행주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수행 역량을 확보하였는가?
	〈사업목표-내역 사업 간 연계성〉 • 내역사업이 사업목표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경제성	〈사업 규모〉 •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된 사업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며, 적절한 수준인가?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지자체 참여내용,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지방비 협약서 등의 참여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내용)를 제시 하였는가?
혁신계획 부합성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부합성〉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중점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며 거점연구기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경우 고려

○ (검토 결과) 12개 시·도 중 컨설팅을 희망한 9개 지역 중점 신규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결과 제시 완료

- 소관부처 정책과 부합성, 기술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 중복성 및 차별성 등 1차 검토('25.12.3~10)

-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기계, 로봇, 제조AI 및 AI데이터 7개 기술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추진('25.11.10~17)

〈 지역별 중점신규사업 컨설팅 의견 요약 〉

지역	주요내용	
강원	사업	중증응급 문제해결을 위한 차세대 AI 기반 응급환자 안전이송 및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개발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정체성, 범위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중점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li> <li>• 구성 세부사업 기술적 특징과 과제간의 연계성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부산	사업	해양·극한환경용 3kV급 Ga2O3(산화갈륨) 전력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지역 내 수요기업 및 사업 효과에 대한 구체화와 부산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 재구성 필요</li> </ul>
충북	사업	AI 융합 SMT 고도화를 통한 반도체 연계 제조산업 AX 촉진 실증사업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을 통해 충북 SMT 산업의 어떤 점이 개선되고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사업 목적 및 효과 명확화 필요</li> <li>• 전반적인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현재 문제점, 기술수준 파악을 통해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전면적인 재구성 필요</li> </ul>
대구	사업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정체 극복을 위한 피지컬 AI 제조로봇 소프트웨어 및 개방형 공유플랫폼 개발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지역기업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 수요 파악 필요한</li> <li>•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활용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유지 가능성에 대한 고민 필요</li> </ul>
전남	사업	AI 및 로봇 기반 대형 철강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부, 예기평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 및 차별성 마련 필요</li> <li>• 중앙정부 예산 투입에 대한 당위성 보완 및 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li> </ul>
전북	사업	전북 특수목적기계 산업 특화를 위한 피지컬 AI 기반 자율행동체 지능화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범위가 너무 넓어 특정 도메인이나 필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li> <li>•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산업부 등에서 추진 중(예정)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 및 차별화 시급</li> </ul>
광주	사업	심뇌혈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개발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관의 보유 역량 제시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관련 산업 동향 및 지원 필요성 제시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li> <li>• 현재 기술적 한계 검토가 되지 않아, 통합 플랫폼 개발에 있어 구성 기술들과의 실질적 연계가 어려워 보이고, 통합 플랫폼 개발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움</li> </ul>
경북	사업	AI 반도체 패키징용 TGV 공정·장비 플랫폼 기술개발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GV기술 관련 유사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근거 있는 구체적 차별성 및 연계 방안 제시 필요함</li> <li>• 산업의 수요-공급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이 중요</li> </ul>
세종	사업	공공데이터 기반 AI 분석·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신규사업으로서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까지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 내용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 범위 정밀 조정 필요</li> <li>•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한한 사업비 규모도 기존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을 포함한다면 다소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li> </ul>



제 4 장

지역 자율 R&D 정책  
방향 제안





## 제4장 지역 자율 R&D 정책 방향 제안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 자율 R&D’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25. 8.)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국정과제 26, 과기정통부) 주요 내용으로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지역 자율 R&D 강화)”함
  -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국정과제 중 중점과제 10, 국정기획위) 주요 내용으로 5극 3특 초광역권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설계도 마련(25. 9.)
  - 중앙주도 자원배분 및 시도단위 단절적 지원방식을 5극 3특별 자율·책임 기반의 균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5극 3특별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종합화하고, 경제권·생활권·행재정 범주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으로 조정
  - 5극 3특 성장 5종 세트 패키지 중 R&D 분야는 성장엔진 맞춤형 기업투자 연계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 발주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자율 R&D’ 체계로 전환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5극3특 경제권 : 성장과 집중	초광역 단위로 경계 확장을 통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패키지 지원*, 인재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삼각 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성장엔진 5종세트) ① 인재양성, ② 규제완화, ③ 혁신지원(R&D·인프라), ④ 재정지원, ⑤ 펀드지원
5극3특 생활권 : 연결과 확산	시도 단위 → 5극3특 권역별거점 중심축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인구·기업·R&D·교통망 패키지화 지원으로 생활권 연계와 확산
5극3특 추진기반 : 행정·재정기반 구축	5극3특 권역별 행정체계 구축·제도화, 예산편성 사전조정권 강화, ‘초광역특별 계정’ 신설 등을 통해 5극3특 전략의 신속·효과적 추진 뒷받침

※ 출처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2025.09) 참고 재구성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추진전략 및 과제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5극 3특’ 국토공간 재설계]

※ 출처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2025.09)

○ 이에 따라 과기혁신본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역 자율 R&D 체계 마련이 필요

- 지역의 초격차 기술을 발굴 및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자율 R&D’ 추진을 위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성과 관리체계 마련 등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방안 구축이 시급
- 지방시대위, 국무조정실, 혁신본부 등 각 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구축 방안 마련도 중요





※ 지방시대위, “균형성장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강화(국정운영 5개년 계획, p245)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국정과제 15,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필요성

○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산업·경제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가운데, 심각해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에 주목

-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지역 주도로 첨단기술 육성, 인접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메가시티 구성 등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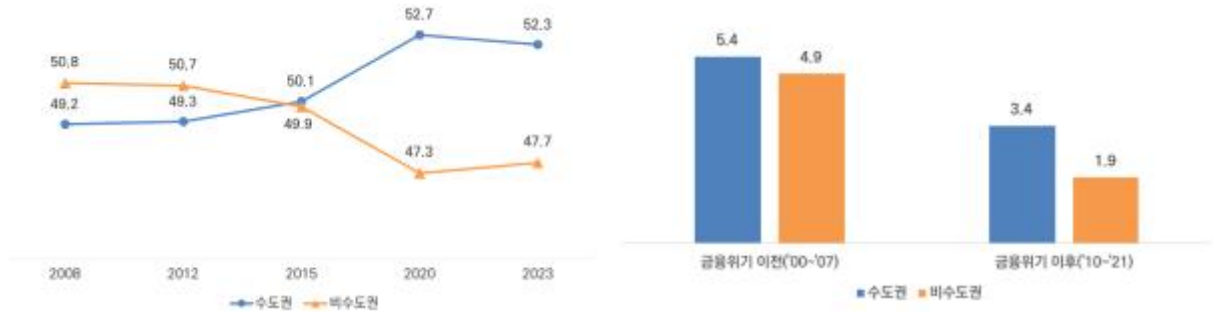
## 〈주요국 지역 혁신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America 2050을 통해 대규모 초광역권 구축전략 추진,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지역기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 센터별 핵심 기술분야 연구개발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도시 외 지역 성장 추진
	접경지역 간 협력 및 클러스터 정책을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유럽 국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간 '더 나은 협력 거버넌스(a better cooperation governance)'를 통한 지역 불균형 개선
	주요 지방도시 중심으로 8개 도시권 형성 및 분권협상을 통한 연합지자체 운영, 지역별 특성, 강점을 고려하여 구축된 9개 Catapult center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학협력 R&D 및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
	지역 산학연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혁신기구를 통해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4대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

※ 출처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참고 재구성

-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
  -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발전 체계를 5극 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자율 R&D 신규 추진 필요
- 참여정부 이후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오히려 심화됨
- 2010년 초반까지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았으나 2010년 중반 이후 수도권에 역전당하여 그 격차가 확대됨
  - 2000년 비수도권 GRDP 비중이 약 54%로 추산되었으나 2011년에는 52.9%, 2023년에는 47.7%로 감소함
  - 금융위기 이전까지 수도권의 연평균 성장률이 5.4%, 비수도권 4.9%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년~2021년) 비수도권 경제의 성장동력이 수도권 대비 현저히 약화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수도권 3.4%, 비수도권 1.9%로 그 격차가 1.5%로 대폭 벌어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및 연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

[수도권 대 비수도권 연평균 경제성장률(%)]

※ 출처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각 년도' 재구성

○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노동절약적 혁신의 도입 등의 영향이 컸지만, 이와 더불어 고성장 기업과 신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지역산업의 역동성을 키우지 못한데 기인함

○ 이는 결국 지역 과학기술투자 확충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19년도 지역 R&D 투자 규모(수도권 포함)는 2조 2,163억원(전체 R&D 투자의 10.83%)에 이르고 '23년도는 3조 3,707억원(전체의 11.25%)으로 매년 약 10% 이상을 지역 R&D에 투자함

\* '25년도 지역 R&D 투자 계획은 6조 6,528억원(중앙정부사업 5조 6,914억원, 지자체사업 9,614억원)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국가R&D사업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CAGR	
수도권	66,726	72,113	82,092	86,671	104,025	411,627	11.7	
	(32.6)	(31.7)	(33.9)	(33.4)	(34.7)	(33.4)	-	
	서울	38,571	41,715	48,767	51,223	56,024	236,300	7.8
	경기	24,139	25,611	28,082	30,038	41,064	148,934	11.2
인천	4,016	4,787	5,243	5,410	6,937	26,393	11.6	
비수도권	대전	58,439	65,132	68,208	74,698	83,050	349,527	9.2
	(28.6)	(28.7)	(28.2)	(28.8)	(27.7)	(28.3)	-	
기타 (대전 외)	79,432	89,997	91,825	98,348	112,489	472,091	9.1	
(38.8)	(39.6)	(37.9)	(37.9)	(37.6)	(38.3)	-		
총합계	204,597	227,242	242,125	259,717	299,564	1,233,245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1) 지역으로 구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외와 기타는 제외

주2) 기타(대전 외) : 대전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의 합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각 년도' 재구성

- '19년 정부R&D 예산의 지역별 집행 규모는 수도권 6조 6,726억원(32.6%), 비수도권 6조 8,724억원(33.6%)\*, '23년 수도권 10조 4,025억원(34.7%), 비수도권 10조 1,253억원(33.8%)\*으로 수도권 비중 확대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이 분포한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비율 값

- 최근 5년간('19~'23년) 지역의 R&D 집행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도권, 대전의 비중이 높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및 연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가 R&D사업 투자 추이]

[ '23년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가 R&D사업 투자 현황 ]

※ 출처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각 년도' 재구성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 R&D 투자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 경제적 성과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지역 R&D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 R&D 현황

- 지역 R&D는 지역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혁신 주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인력양성, 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 인프라 구축, 신산업 육성 등의 연구개발사업
  - \* 중앙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연구개발사업과 각 부처의 지역관련 R&D사업,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R&D 사업 등을 조사하여 매년 통계를 작성 중임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R&D 사업이 대부분('24년, 83.5%)이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산하 공립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연구비나 소재 지역 대학, 기업 등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에 불과('24년, 9,961억원 16.5%)함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중앙정부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자율 R&D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므로 향후 제도 정비 후 지역 자율 R&D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편입 가능
- 사업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광역형 지역 R&D와 초광역형 지역 R&D로 분류 가능
  - 대부분의 지역 R&D 사업은 광역시·도(특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광역 대상의 지역 R&D 사업은 일부 시작되는 단계임
    - \* 24년도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등 초광역 사업 착수(초광역권별 국비 480억원, 지방비 206억원)
- 재원, 사업기획의 주체, 선정 등 관리기관 등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지자체 주도형, 광역자치단체형/초광역형 등으로 분류 가능

〈지역 자율 R&D 분류(안)〉

구분	중앙정부 주도 지역 R&D (지역 수요 반영 포함)	지역 자율 R&D	지역 자체 R&D
		중앙·지자체 재원	지자체 재원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가	나	마
'5극 3특'	다	라	바

- 현재 지역 R&D 사업은 대부분 '가'와 '마' 유형에 해당하고 '다' 유형은 신규로 추진 되기 시작함
-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9대 중점 추진과제별로 분류하나 향후 인재양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활동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른 세부 분류도 필요함

## □ 지역 R&D 투자의 성과와 한계점

### ① 주요성과

- 지역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 혁신지원, 창업 등 기술사업화 및 성과 확산 등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신규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하며 신규 재원 확보에 노력
  - 과학기술육성기금(대전), 과학기술진흥기금(경기), 중소기업투자기금(경남), 미래성장 벤처 펀드(부산), 창업펀드(광주) 등을 결성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이 혁신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 하는 방식의 확산
  - 지역기술혁신허브, 우수 지역 혁신클러스터 등은 추진 방향을 수립, 지역과 공유한 후 지역이 기획하여 추진
  - 효과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이들 사업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내 취·창업 연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특색과 수요 등을 반영한 혁신 방안 시행
  - 지역별로 라이즈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와 라이즈센터를 설치하고 교육부 차원의 라이즈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 운영

### ② 한계점

- 대부분의 지역 연구개발사업이 중앙부처의 일률적 지침과 기획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 등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제약하여 저성장으로 이어짐
- 부처간 협의가 부족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 내 중복투자와 연구단계별(연구 개발 - 사업화 등) 연계 단절 등의 비효율성 심화
- 신규사업 발굴 중심의 경쟁적 사업 기획이 강화 되면서, 중장기적 지역 혁신기반 축적보다는 단기 예산 집행 중심의 사업구조로 고착
- 단기적 성과 위주의 '예산 쪼개기'식 지원은 결과적으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 역량 형성이 어려운 구조
- 지역의 혁신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와 내용의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성과를 내기 어려운 행태를 반복
- 각 지자체 내에서 여러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곤란하고 일회적이고 분산적으로 집행

- 지자체의 R&D 투자가 대규모 시설·장비 구축 중심으로 편중되어, 실질적 연구성과 창출 및 산업 연계 효과가 제한되고 구축된 시설·인프라 방치도 문제
- 지역 내 협력체계가 취약하고, 종합조정 기능이 미비할 경우 지역 전략산업의 통합적 추진과 중앙정부 정책 연계가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

### 제3절 해외 지역 혁신성장 성공 사례와 시사점

#### □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 (Noord-Brabant)

- 노르트브라반트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S3\*를 통해 지식-기술-비즈니스의 연계에 집중하여 하이테크 시스템 및 재료(High-Tech Systems and Materials, HTSM) 분야를 전문화 시킴

\* S3(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는 현지화, 우선투자, 참여를 기반으로 EU 지역 및 국가의 지식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인 유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 (클러스터 기반 투자) '브레인포트 아인트호벤(Brainport Eindhoven)'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집중하고 클러스터는 ASML(반도체 장비)과 필립스(헬스케어) 같은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을 묶어 시너지를 창출

※ (프로젝트 베토벤) 중앙정부, 브라반트주, 에인트호번시, 필립스·ASML·TU/e·하이테크캠퍼스 등 민간기업이 공동 투자하고 특히 지역정부와 기업이 절반 이상을 부담

- (EDP 실행) 지역 내 기업, 지식 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인 워크숍 및 포럼을 통해 신규 투자 분야와 기술 격차를 확인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수정하기를 반복
- (성과)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강화되어 HTSM 분야의 특허 출원과 고용 증가를 이끌고,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우수 클러스터로 선정

#### □ 스페인, 바스크 지방 (Basque Country)

- 바스크는 한때 조선 및 철강 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S3를 통해 전통 산업의 혁신적 전환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생명과학, 에너지 분야 육성에 성공함

- (바스크 과학기술네트워크(RVCT) 활용) 지역 내 모든 대학, 기술센터, 연구기관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S3의 3대 전문화 분야를 지원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함
- (지방정부의 전략적 리더십) 지방정부는 '바스크 테크놀로지 파크'와 같은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략을 강력하게 이끌어 감
- (산업 전환) 전통적인 금속 가공 기술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회복함

#### □ 폴란드, 마워폴스카 지방 (Małopolska)

- 크라쿠프를 포함하는 마워폴스카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이었으나, S3를 통해 잠재력이 큰 분야에 공공 투자를 집중함

- (다중 나선형(Quadruple Helix) 거버넌스) 크라쿠프 생명과학 파크(Krakow Life Science

- Park)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병원, 그리고 ICT 기업들이 협력하는 강력한 생태계 구축
- (청년 인재 활용)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ICT 및 생명과학 인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둠
- (테마별 작업반 운영) 각 전문화 분야별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s)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EDP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

□ 미국, 피트버그(러스트벨트)

- 1970 ~ 80년대 철강산업 몰락 후 ‘러스트벨트’의 상징 도시
- 지역 주도 전략으로 시정부·카네기멜론대(CMU)·피츠버그대 등이 힘을 모아 로보틱스·바이오 헬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지정
  - 지역재단(멜론재단 등)이 초기 자금을 조달한 후 도시 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 CMU NFEC, 로보틱스 기업 80여개 집적하여 바이오·의료 벤처까지 확산, 피츠버그가 다시 ‘혁신도시’로 부활
  - 지방정부+대학+민간재단이 장기 전략을 합의하고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점이 핵심

□ 독일 실리콘 작소니(Silicon Saxony·드레스덴권)

- 앵커기업 인피니온·글로벌파운드리·TSMC의 투자와 TU 드레스덴·프라운호퍼와의 연계
  - 반도체·소프트웨어·장비 삼각 클러스터로 인력·공급망을 권역 내에 흡수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ICT 81,000명 고용(’23)
  - 투자 확대에 따라 ’30년 10만 이상 고용 전망 및 직·간접 고용 2.4만 ~ 3만 증가 추정

□ 시사점

- 전략적 집중(Strategic Focus)을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강점 분야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를 기반으로 기업, 연구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EDP를 통해 시장 수요에 맞는 혁신 분야를 발견하고 전략의 실행력을 높임
-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EU 자원(ERDF)과 지방 재원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함

## 제4절 '지역 자율 R&D' 사업의 전략적 추진

### 1 지역 혁신성장의 신국면 주도

#### □ 5극 3특 중심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 추진

- 수도권 중심 성장 모델 한계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 경쟁력 약화로 국가 지속가능성 저하
  - 수도권 및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과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 및 삶의 질 개선에 한계
    - \* '23년 기준 정부 R&D 예산(약 29.9조 원) 중 수도권 및 대전이 약 18.7조 원으로 62.4% 차지
  - 국가 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장기화되며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지역 간 기술·경제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 고착화
- 지역 특화전략 미비와 및 유망 기술의 편중 현상으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사업 추진과 지역의 역량 축적이 곤란
  - 중앙정부 주도 정책 체계로 인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전략 수립·이행이 곤란하며, 자원 부족 등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역량 축적에 제약
  - 대부분의 지역이 자체적인 중장기 산업 전략 없이 정부 공모사업이나 부처 과제에 종속된 형태로 단기·소규모 R&D 참여
  -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지역 또한 경쟁적으로 유망 기술에 과잉 집중하는 경향 심화
    - \* 상위 3대 투자 분야 : (1순위) 첨단바이오 1.7조, (2순위) AI 1.3조, (3순위) 반도체·디스플레이 0.9조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으로 지역 주도 혁신 및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중심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 추진
  - 지역이 자기책임 하에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스스로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 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가능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기획-집행-성과관리 전주기를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

□ 성과목표 지향의 지역 R&D로 전환

- 지역 자율 R&D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G7 사업 형태의 신제품·신공정 등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체제 마련
  - 지금까지의 지역 R&D는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발굴 및 육성, 지역 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 등 연구기반 구축과, 창업·기업 경쟁력 제고 등 개별 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됨

□ 지역이 기획부터 실행, 실증·사업화까지의 전주기 주도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R&D 설계
  - (자율 기획) 지역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등을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지원
  - (재정 주도성) 지역이 스스로 자치 재원을 확보한 후 중앙정부의 블록펀딩 예산을 활용
  - (자력 수행) 지역내 앵커기업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 지역 내에 귀속 되는 사회경제적 성과 창출
  - (성과 책임) 지역이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속 실증과 사업화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책임 수행
- 타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달리 연구개발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관리
  - \* “지식의 집적분(인간,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지식 포함)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OECD, Frascati Manual)”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 혁신법 등에서의 R&D 사업 정의에 따라야 함
  - 지역사회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되 R&D 예산을 비R&D 성격의 사업에의 사용을 내외 부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으로 정립

□ 타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로 동태적 지역혁신성장체제 구축

- 중앙정부 지역 R&D사업과 지자체 자체 R&D사업으로 기구축된 연구장비·인프라, 혁신기관 육성 등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활동 중심의 사업 추진
  - 지금까지 확보한 지역내 기술, 인프라, 과학기술인력 등 혁신역량을 총결집한 추진체제를 구축
- 청년 과학기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연구개발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과학기술인 유입과 정착을 유도
  -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면 연봉 50백만원의 청년 과학기술인 2,000명을 신규로 채용 가능하고 30년까지 1만명 고용효과 발생(사회경제적 성과 예시)

- 청년 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면 결혼, 출산, 소비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인건비	100십억원	200십억원	300십억원	400십억원	500십억원	1조4천억
신규 고용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10,000명
고용 누계	2,000명	4,000명	6,000명	8,000명	10,000명	

- 연구개발활동 중심의 투자는 연구기획 및 관리, CRO 등 실험전문기업 등 연구산업 활성화도 유도하여 일자리 추가 창출 효과 발생
- 연구장비·시설 등은 지역에 구축된 혁신자원을 활용하거나 타 지역의 혁신자원 공동활용 활성화로 해결
  - 특히 연구시설·장비의 신규 구축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타 지역 연구시설·장비 활용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연구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유도

## 2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와 연계 추진

### □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

- 새정부 출범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대두
  -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재정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방향·목표·과제를 통합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 수립
  - \* 지방시대위원회는 법정 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23~’27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시·도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국정과제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중점과제 10)’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경제·생활·행재정 3대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 설정
  - 이는 기존에 범부처 차원 종합 실행계획 없이 개별 추진되던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 기획위·대통령정책실·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총괄·체계화한 성과
- 부처별로 흩어져 개별·경쟁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을 5극 3특 권역의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종합화하고, 경제권·생활권으로 범주화·구체화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의 성과 도출
  - (경제권) 권역 단위로 경계 확장을 통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 인재양성 ↔ 산·학·연 혁신 거점 조성 삼각 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생활권)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60분 생활권)을 중심축으로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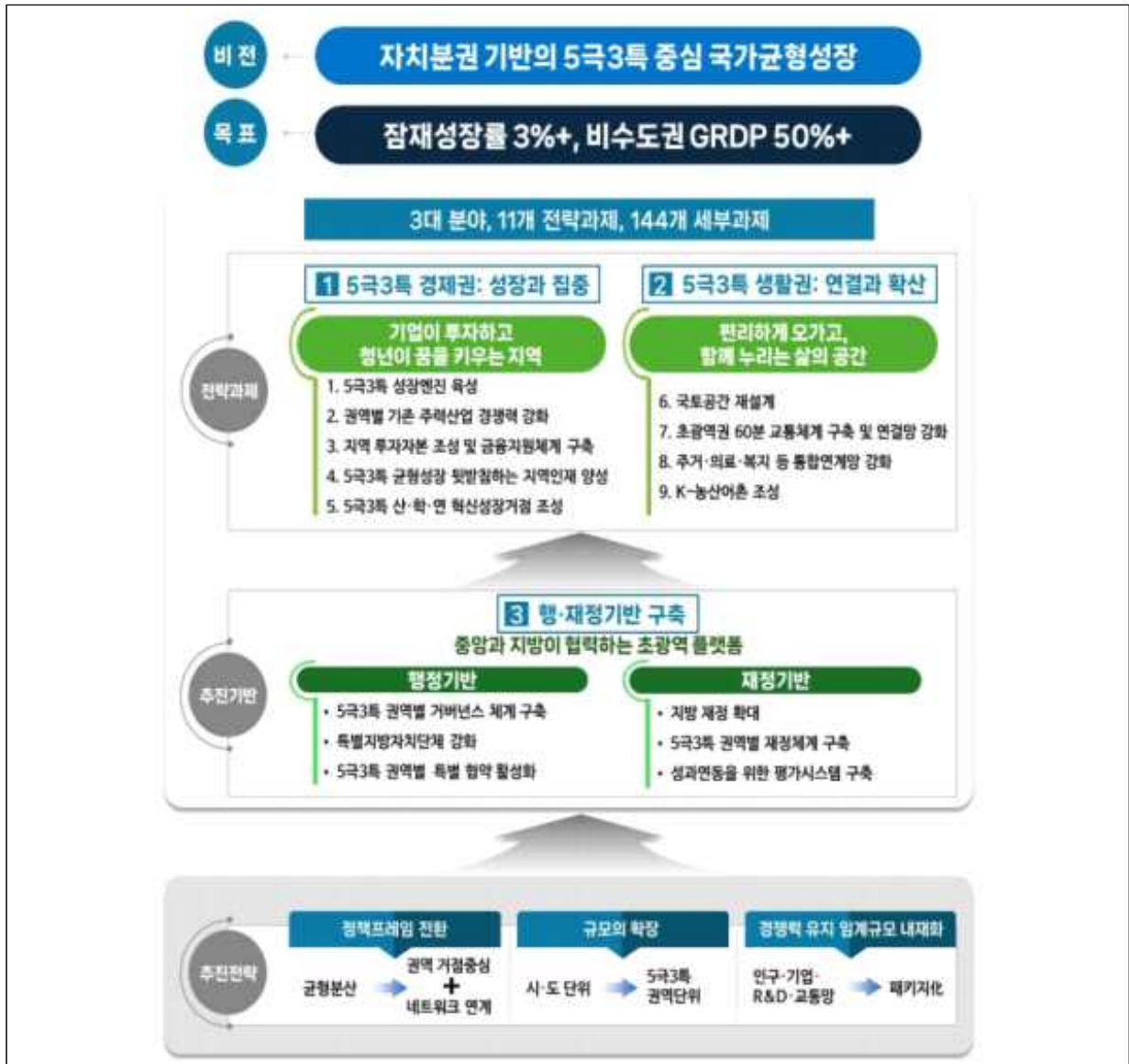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 강화

- (행정) 5극 3특 권역별 행정체계 구축·제도화, 예산편성 사전 조정권 강화, ‘초광역특별 계정’ 신설 등을 통해 5극 3특 전략의 신속·효과적 추진 뒷받침

□ 과학기술혁신성장 중심의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 제시

-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과학기술혁신성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차원의 지역혁신성장 전략 및 실천방안을 확립
- 국가 차원 지역혁신성장 전략 및 실천방안의 핵심으로 지역 자율 R&D 프로그램 실행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 추진목표 및 전략〉



※ 출처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2025.09)

- 궁극적으로 지역 자율 R&D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발전 체계를 5극 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실행수단으로서, 지역 중심의 기술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기반 마련

### 3 중앙 주도 '지역 R&D' 사업 등과의 차별화

#### □ '지역 자율 R&D' 사업의 지역적 범위

- 중앙정부의 지역 R&D와 지자체의 자체 R&D와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투자에 기여
  - ※ 향후 중앙부처 R&D 예산 중 지역 자율 R&D 예산으로 재분류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 R&D를 수행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 초기에는 5극 3특 단위로 실시하면서 향후 지역 자율 R&D 예산 규모 확대와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전제로 광역지자체로까지 확대

	중앙정부 주도 지역 R&D (지역 수요 반영 포함)	지역 자율 R&D (중앙·지자체 재원)	지역 내부 R&D (지자체 재원)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가	나
'5극 3특'	다	라	바

- 시행 초기에는 수도권 제외 불가피
  - '23년 기준 전체 정부 R&D 예산 중 수도권이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1.7%로 비수도권의 9.1%\*을 상회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이 분포한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비율 값
  - 지역 자율 R&D 사업이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되므로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검토

#### □ '지역 자율 R&D' 사업의 내용적 범위

- Track 1(주력 산업 고도화) : 지역 주력산업의 구체적 사회·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RL 6 또는 7 이상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정부조달·초기시장 창출까지 담당
- Track 2(미래 성장동력 준비) : 지역의 잠재력과 혁신역량을 토대로 도출한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

구분	중앙정부 R&D	지역 자율 R&D
원칙	성공 리스크가 크거나 파급효과가 지역을 벗어나는 성격의 연구개발 활동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직접적 파급효과가 지역에 나타나는 성격의 연구개발 활동
외부효과 (외부성, Externality)	외부성 큼	외부성(외부효과) 작음

○ Track 1과 2 재원 배분 : 7~80%를 Track 1에 투자하고 나머지 2~30%를 Track 2에 배분함으로써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확보를 우선하도록 유도

□ 지역 자율 R&D 포트폴리오 최적화

〈투트랙(Two-Track) 지원 방안〉

구분	Track 1 : 주력 산업 고도화	Track 2 : 미래 성장 동력 준비
목적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위기 극복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
대상 기술	TRL 6~7단계 이상의 상용화 임박 기술	TRL 3~5단계 원천·응용 기술(High Risk)
지원 비중	예산의 70~80%(안정적 성과 지향)	예산의 20~30%(미래 투자 지향)
성과 목표	매출 증대, 공정 개선, 단기 일자리 창출	신규 창업, 특허 확보, 장기적 산업 구조 개편
추진 주체	앵커기업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연구소·벤처의 딥테크(Deep-tech) 발굴

○ 선도기술개발사업(G7),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S3) 등의 성공사례에 따라 사업 초기에는 전략적 집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소수의 산업에 집중하도록 지원 조건 부과(예 : 주력산업 1 + 미래 성장동력 1)

\* 미래 성장동력도 주력산업으로부터 확보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우선 검토

□ R&D 사업 유형별 차별화 방안 사례

○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은 기존 RISE 사업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인력풀의 확충 및 고도화(석학 유치, 고경력 과학자 등 활용) 등을 위한 양성사업은 허용

○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투자 회임기간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역 자율 R&D 사업에 불포함

\* 각 지역에 기 구축된 다수의 연구 인프라의 낮은 활용도 등도 고려

산/학/연 혁신기관 육성	과기인력 양성	협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연구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지역 R&D	지역 자율 R&D	중앙정부 국가 R&D	
지자체 R&D			
중앙정부 국가 R&D			

- ‘지역 자율 R&D’ 신설에 따른 ‘중앙 주도 지역 R&D’ 사업의 재분류 및 개선
  - 중앙정부 지역 R&D 사업의 성격이 지역 자율 R&D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상황이 중앙정부의 지역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유사 중복성이 높은 중앙정부 지역 R&D 사업을 지역 자율 R&D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지역의 미래 유망기술 개발, 미래 성장동력 등의 추가적 육성, 타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력 촉진 등 사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제 등을 차별화
- 시사점
  - 중앙 부처 지역 R&D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중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 혁신주체 육성 등 기반적 성격의 R&D 담당
  - 지역 자율 R&D는 직접적 사회·경제적 성과 목표 지향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성격의 R&D로 집중하면서 범부처 공동의 패키지 사업, 중장기 사업, 중대형 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

#### 4 5극 3특별 ‘지역 자율 R&D’ 사업간의 차별성 확보 방안

- 5극3특별 ‘성장동력’ 사전 조정에 의한 차별화 방안
  - 지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둘러싼 갈등 심화가 우려되나 지역 자율 R&D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조정은 필요
    - 사업의 중복이 명확하고 이로인해 국가적 비효율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여
- 조정 절차와 기준
  - 현재와 미래 산업을 구분하여 지역, 핵심 성장동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각각 선정
    - (핵심 성장동력) 현재 지역의 주력산업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고도화와 연계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
    - (미래 성장동력)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현재 주력산업을 대체(예, 자동차 → 미래자동차) 하거나 이와 별개로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특정하여 자율 선정

- 선정절차 : ① 혁신본부, 지역 성장동력 후보 분야 도출 및 선정 방법론 마련(가이드라인) → ② 5극 3특, 성장엔진·성장동력 후보 분야 발굴 제출 → ③ 혁신본부, 분석 및 평가, 5극 3특별 성장동력 조정

- KISTEP은 혁신본부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구성 운영

- 현재 역량과 미래 잠재력 등을 동시에 상호 고려하여 분석한 후 성장동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도출하여 심의 및 선정

- 지역별 구체적 성장엔진과 미래 성장동력 도출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므로 절차가 확정 되면 추후 별도 검토 바람직

- 혁신본부 차원의 기초자료 조사와 초광역별 수요 조사 등을 종합하면서 진행 필요

- ◆ 지금까지의 지역 R&D 투자와 혁신의 결과로 현재의 지역혁신역량과 산업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 내역과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을 도출하는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

- ◆ 현재 산업구조 분석에 치우치면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놓칠 수 있으므로 기술환경 변화를 토대로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

- 기 구축된 역량을 투입하여 사업 종료 시점에 경제·사회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혁신역량, 산업구조, 혁신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성장동력 선정에 활용

- 지역의 혁신역량과 이머징 제품 및 시장, 부품·소재·원료 등의 공급망에서의 지역 위상, 미래 유망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전후방 산업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 제5절 '지역 자율 R&D' 예산의 제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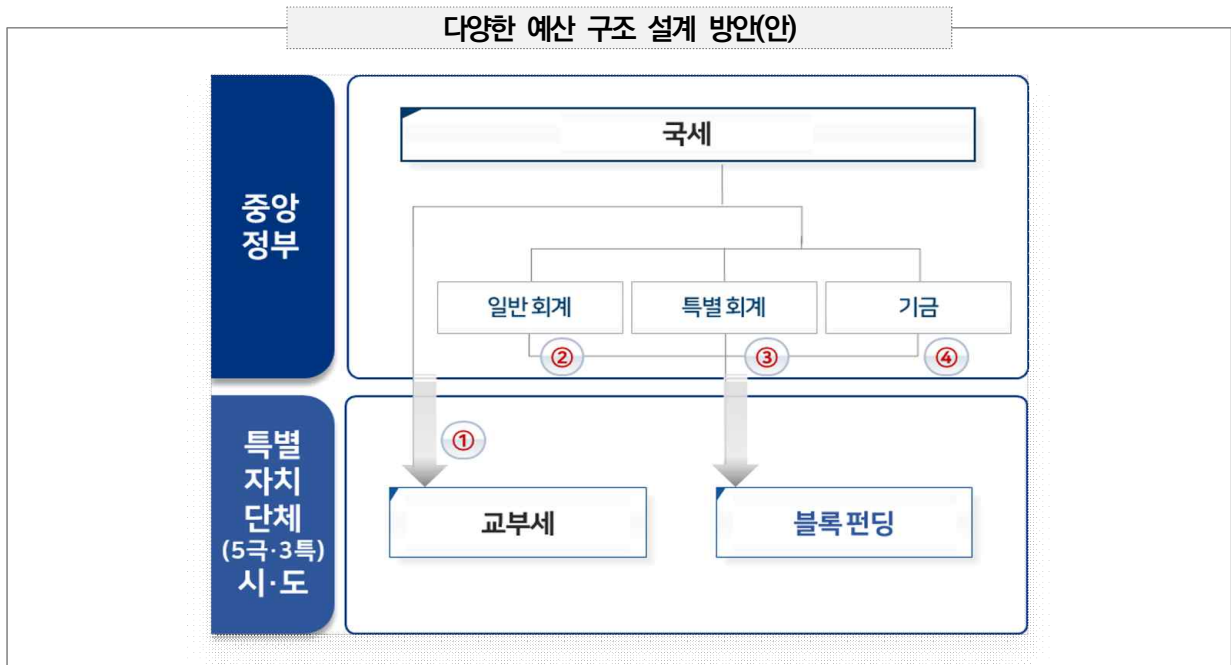
### 1 예산 구조 혁신으로 지역 자율 R&D 제도 정착

#### ① 특별회계 등 지역 자율 R&D 예산 제도 마련

- 중앙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R&D'에 블록편당할 재원을 담아두는 기능을 할 회계·기금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회계·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예산 제도별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자율 R&D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제도가 필요

구분	기금(Fund)	특별회계(Special Account)
설치 목적	특정 목적사업 수행 자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특정 목적 달성 일반예산의 경직성 탈피
운용 자율성	상대적으로 높고 여유자금을 보유하여 다음 회기에도 사용 가능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낮음
회계연도 구속	잔액이나 여유자금 이월	회계 연도 내 집행 원칙
조달 등	다양한 수입원 존재 민간으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도 가능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도록 법제화

-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모두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 가능하므로 국회 심의가 필요
  - 기존 회계 등을 활용하려면, 이미 이를 관할하는 규정들이 지역 자율 R&D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회계 제도 설계 필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R&D 자율계정을 신설하여 관련 예산을 담아둔 후 이를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
  - (특별회계) 혁신본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별도 신설하거나 지방시대위의 기존 지특회계 내 별도 계정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 ※ (관리부처) 혁신본부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 (기금) 유연한 기금 방식의 장점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 ※ 교부세 방식은 지역 자율 R&D 예산 규모가 큰 규모(수십조원)에 달하고 지역혁신성장 거버넌스가 성숙되는 미래 시점에 검토 가능



○ 특별 예산제도(특별회계 또는 기금) 단계적 도입 및 운용 방안

- 1단계 : 균특회계 재구조화(2026~2030)

- (방안) 현행 균특회계(지원계정) 내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정(가칭)’ 별도 신설
- (재원 조성)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지역 관련 R&D 예산을 이 계정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
- (관리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하되,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추진 가능
- (장점)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국가재정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2단계 : 독자적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2031~)

- (방안)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하고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지역자율혁신촉진기금(가칭)’ 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전환
- (특징) R&D 투자의 특성상 장기적인 안목과 유연한 집행이 요구되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월이 용이한 기금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는 다년도 협약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제공

## ② 자율 R&D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절차의 마련

### (1) 예산 편성

- 예산 총규모의 결정과 세부 편성 절차를 관계 부처, 국회 등과 협의 결정
  - (1안) 중앙정부 일반회계 등의 연구개발예산에서 지역 자율 R&D 재원을 매년 혁신본부가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지방시대위와 협의하여 결정
  - (2안) 예산처(국무총리실)가 혁신본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직접 결정
- 국가 예산에서 지역 자율 R&D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혁신본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 R&D 예산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혁신본부가 예산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당국의 동의가 필요함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역 자율 R&D 예산 총액이 결정된 후 이를 부처별로 배분하거나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과 절차를 각 부처와 협의 결정
  - (1안) 부처별로 배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
    - ※ (특징) 수요자인 지역 입장에서 부처별로 각각 대응할 필요 없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음
  - (2안) 부처별로 배분한 후 다시 지역별로 배분
    - ※ (특징) 재원의 연원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부처가 이를 각 지역에 블록편당하는 절차이나 수요자인 지역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잡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액 예산 등 연원을 밝히지 못하는 재원의 경우에는 처리하기 곤란

### (2) 지역별 배분

- 초광역과 3특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광역자치단체까지 지역 자율 R&D 사업을 확대하여 나갈 경우를 고려하여 교부 대상을 결정하며 다만 수도권 제외에 대한 국민적 공감 필요
  - (1안) 초광역권(5극 또는 수도권 제외 4극)과 3특
    - ※ (특징) 지역 자율 R&D 시행 초기 초광역권과 3특 대상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경우에 적합하나 광역지자체로 확대되는 경우에 배분 대상 재조정 필요
  - (2안) 초광역권과 광역자치단체(3특 포함)
    - ※ (특징) 지역 자율 R&D를 광역과 초광역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합하나 초기에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3안) 광역자치단체(3특 포함)
    - ※ (특징)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배분받은 예산에서 각자 부담분을 출연하여 초광역 '지역 자율 R&D' 재원을 조성해야 하므로 광역별로 차등 배분되는 경우 초광역 예산 출연 규모를 두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3) 지역예의 교부

○ (1안) 배분 후 즉시 지역에 블록펀딩

- (장점) 지역에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원래 블록펀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단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관해 출연한 중앙정부가 사전에 점검하거나 지역별 나눠먹기식 집행을 견제할 방법이 없음

○ (2안) 지역의 사업계획 검토·확정 후 사업별로 블록펀딩

- (장점)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유도하여 성과 창출에 바람직함
- (단점) 소규모 사업별로 분절화되어 전체 사업의 시너지를 확보하기에 곤란함

○ 지역혁신성장 거버넌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래 블록펀딩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

- 시행 초기에는 사업별로 블록펀딩하되 사업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출창구를 혁신본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가 심의를 동시에 ‘공동 투자심의단’ 방식(가칭, 지역자율R&D 공동조정협의체)으로 진행

※ 상하반기 범부처 일괄 동시 심의(3개월 이내)와 부처별(예산이 부처별로 배정된 경우) 투자 규모 결정 방식

**<참고> 부처별 ‘지역 자율 R&D’ 역할 분담 방안의 문제점**

- 지역 자율 R&D 취지에 맞게 지역의 전략적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별로 지역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처별로 역할을 나누는 기준도 매우 모호하여 지역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큼
- 논의되는 역할 분담(안)

소관	주요 역할	세부 기능
과기정통부	지역 전략산업의 장기적 원천기술 확보 및 확산	▶ 지역 전략 분야의 기초·응용연구 지원 ▶ 산·학·연 연계 및 R&D 공동기획 ▶ 지역 중점기술 분야 대규모 실증 지원
산업부	기술 성과의 사업화 및 지역기업 생산역량 강화	▶ 지역 주력산업 중심 실증·상용화 지원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 기업 기술수요 기반 R&D 연계
중기부	R&D 결과물의 창업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지역 기반 벤처 생태계 조성

### 3 제도화 방안

- 지방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관련 조항 신설 방안
  - 지방재정법 등에 결정된 방향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처간 협의 추진
  - 국가-지역 R&D 계획 연계 의무화하여 부처별 국가기술전략 수립 시 해당 분야의 지역 기술 수요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
  - 지역 주도의 'R&D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연계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정부의 지역별 R&D 투자 현황·성과 등 정보 공개 의무화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지역별 R&D 투자전략, 전담기관, 산학연 협력방안 등의 추진체계를 반영한 지역 주도의 R&D 추진 법안 마련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지방자치분권법」 만으로는 지역 자율 R&D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예산 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 과학기술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지방시대위간 역할 구분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 (혁신본부) 전체 지역 자율 R&D 예산 및 사업을 총괄
  - (기획예산처) 전체 연구개발예산 규모를 혁신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이 가운데 지역 자율 R&D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참여
  - (지방시대위) 사업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역 자율 R&D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정합성 확보에 기여

## 2 자율 R&D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능동적인 자체 자원 확충

### 1 지역혁신성장 거버넌스 구축

#### (1) 중앙 거버넌스

- 중앙정부 거버넌스 혁신 : '전략적 조정자'로의 전환
  - 기존 지역 R&D 정책은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 추진으로 중복 투자 발생, 지역 통합적 발전 전략과 괴리되는 문제
  -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사업 집행자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국가 전체의 R&D 전략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전략적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로서 역할
- (가칭) '지역 R&D 공동조정협의회' 신설 및 위상 강화

- 현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실질적인 예산 조정 및 정책 강제력 부족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산하에 (가칭)‘지역 R&D 공동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7개 시·도 단체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정책 실행력을 담보
- 기존 차관급 회의체에서 장관급·단체장급 회의체로 격상함으로써, 지역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하도록 함

**〈(가칭) 지역 R&D 공동조정협의회 역할 및 기능〉**

주요 역할	세부 기능
중장기 계획 심의	지역이 수립한 ‘5년 단위 지역 R&D 중장기 로드맵’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국가 기술 전략과의 연계성 검토
재원 통합 조정	각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에 분산된 지역 R&D 관련 예산(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을 ‘지역 자율 R&D’ 재원으로 통합 관리하고, 권역별 예산 총액(Ceiling) 가이드라인 설정
갈등 조정	5급 3특 간의 산업 분야 중복을 조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산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 중앙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 부처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R&D 단계 및 목적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 중앙 부처는 지역이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 역할 수행

**〈중앙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부처	역할 정의	세부 지원 기능
과기정통부	기초·원천 기술 확보	지역 대학 및 출연연 분원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 산업의 장기적 기술 경쟁력을 담보할 기초·응용 연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사업화 및 실증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역 주력 산업 중심의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생산 역량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및 벤처 생태계	R&D 결과물의 기술 창업(Spin-off) 촉진, 지역 기반 벤처 펀드 조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2) 지역 거버넌스 : 심의와 집행·관리의 이원화

○ ‘지역혁신 R&D 위원회’는 지역의 R&D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구성) 지자체장과 지역 연구소(민간 포함)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역 내 산업계(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하여 ‘다중 나선형(Multi-Helix)’

## 거버넌스 구현

- (역할) 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R&D 중장기 로드맵’ 및 연도별 시행계획 최종 심의·의결 ② 블록펀딩 예산의 세부 배분(산업별, 트랙별 비중 등)을 확정 ③ 사업 수행 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성과 관리 결과에 따른 예산 환류 결정

## ○ 집행·관리기구 : (가칭) ‘지역 R&amp;D 추진단’

- ‘지역 R&D 추진단’은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전문 관리기관
- 공무원 조직의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독립적인 법인 또는 전문 조직으로 설립

## 〈(가칭) 지역 R&amp;D추진단 역할 및 기능〉

주요 역할	세부 기능
기획 지원	지역 내 혁신 자산(인력, 장비, 기술 등)에 대한 정밀 진단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상정
사업 관리	사업 공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정 평가, 협약 체결 등 사업 관리 전 과정 투명하게 수행
성과 점검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진도 관리, 성과 데이터 수집, 컨설팅 제공 등 밀착형 지원 담당

## ② 5극 3특별 지역 자율 R&amp;D 사업 관리기관 육성과 역량 강화

## ○ 관리기관 선정 및 육성 방안

- (1안) 초광역, 지역자율R&D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Virtual Team)
  - (초기) 별도의 법인을 즉시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광역지자체 관리기관인 연지단, TP, 광역특구본부 등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운영
  - (장점) 초기 설립 비용 최소화 및 신속한 조직 구성 가능
  - (단점) 파견 인력의 소속감 저하 및 조직 간 화학적 결합의 어려움 발생
  - (보완책) 파견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추진단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여 조직 장악력 강화
- (2안) 광역연구개발특구본부 등을 초광역 또는 3특의 사업관리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운영 선정된 광역특구본부 등의 업무범위에 초광역 사업 관리 기능을 포함
  - (장점) 검증된 전문성과 행정 시스템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운영 방안) 특구본부의 업무 범위에 ‘지역 자율 R&D’ 관리 기능을 법적으로 추가하고, 해당 권역 지자체들이 운영 경비를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

○ 사업단·연구단과의 관계

- 관리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별 책임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사업을 관리하도록 관계 설정

○ 관리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단순한 조직 설치를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질적 고도화 필수적

① 지역 R&D 전략 인재 Pool 구축 및 매칭

- 중앙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KISTEP, KEIT 등) 고경력 과학자, 퇴직 예정 연구원, 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략 인재 Pool' 구축
- 이들을 지역 관리기관의 PM(Project Manager)이나 기획위원으로 순환 파견하거나 채용을 연계하여, 중앙의 노하우를 지역에 이식

② 지역 R&D 전략 아카데미 운영

- KISTEP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협력하여 지역 관리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
- 기술 로드맵 수립, R&D 타당성 조사, 성과 관리 방법론, 기술 사업화 전략 등을 집중 교육하여 '기획 전문가' 양성

③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허용

- 지역 내 역량만으로 부족한 분야는 외부(타 지역, 해외) 혁신 주체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 특히 지역 앵커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 지역 내 없을 경우, 외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허용하여 기술 도입과 내재화를 지원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유연성을 제고

③ 지자체의 지역 자율 R&D 예산 관리

○ (1안) 중앙재원· 지방재원 통합 관리

- 하나의 초광역 회계(특별회계·기금 등)를 신설하여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을 통합하여 관리

○ (2안) 중앙재원은 5극 3특별 사업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사업 추진시에 각 광역시·도 분담금 출연

④ 지역별 민관 공동의 벤처투자 펀드 등을 추가 조성

- 지자체가 중앙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선투자(Pre-investment)' 개념으로 전환

## ① 지역 과학기술 진흥기금의 활성화

- 지자체가 보유한 잉여 재원이나 유휴 자산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 과학기술 진흥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
- 중앙정부는 자체 기금 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블록펀딩 배분 시 가점 부여

## ② 자산 유동화 및 지역개발 채권 활용

-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 시, 향후 발생하는 수익(기술료, 임대료 등)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ABS) 발행이나 지역개발채권 등 민간 자본을 선제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 지자체의 재무 안정성 훼손 우려에 대비한 제한 규정 마련 여부
- \* 참여정부에서의 '과학기술사업화채권' 논의 참고

## ③ 지방세 감면 및 조례 제정

- 지역 내 기업이 지역 자율 R&D 사업에 참여하거나 기부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재원의 유입을 촉진

## ○ R&amp;D 성과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Capital) 뒷받침 필수적이므로 지역 주도형 모펀드(Fund of Funds) 적극 조성 유도

- (재원 확보) 지방비와 국비, 민간 자본 등으로 조성
  - ※ 지방비 : 지자체 자체 예산 및 지역 내 공기업, 금융기관(지방은행 등)의 출자금
  - 국비 : 중기부 모태펀드 또는 성장금융의 지역 계정 자금 매칭
  - 민간 자본 : 지역 중견·대기업(CVC), 대학, 지역 자산가, 벤처캐피탈(VC) 등의 기금
- (운용 전략) 이 모펀드는 다시 여러 개의 자펀드(Sector Fund)에 출자하며, 자펀드는 반드시 해당 지역 내 기업에 일정 비율(예: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

## ○ 민간 자본 유입(Crowding-in)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 수도권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낮은 지역 펀드에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필요

## ① 우선 손실 충당(First-loss Coverage)

- 펀드 운용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출자분이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설계하여 민간 투자자의 원금 리스크를 낮춤(예: 손실의 10~20%까지는 지자체 지분으로 우선 충당)

## ② 초과 수익 양보(Call Option)

- 펀드가 기준 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 지자체에 귀속될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민간 출자자나 펀드 운용사(GP)에게 인센티브로 양보하여 기대 수익률을 높임

③ 지역 앵커기업 CVC 참여 유도

- 지역 기반의 중견·대기업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여 펀드에 참여할 경우, 세제 혜택과 함께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우선적으로 매칭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연계

○ 대학 및 연구소 기반의 기술지주회사 펀드 활성화

- 지역 거점 대학과 출연연 분원이 보유한 기술을 현물 출자하고, 지자체가 현금을 출자하여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
- 연구실의 기술(Seeds)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가교 역할 수행

⑤ 블록펀딩의 구축효과 및 예산 낭비 방지 방안

○ (Crowding out 효과 배제) 구축(Crowding-out) 대신 ‘유입(Crowding-in)’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노력 유지(Maintenance of Effort, MOE)’ 규정 도입

※ 미국 연방 보조금 제도(예: 교육 예산)에서 활용되는 ‘노력 유지(MOE)’ 조항 벤치마킹

- (규정 내용) 지자체가 중앙의 블록펀딩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 R&D 예산 지출 규모’가 과거 3년 평균치 이상이어야 함을 의무화
- (페널티) 만약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감축했을 경우, 감축한 비율만큼 중앙정부의 블록펀딩 지원금을 삭감하며 중앙 지원금이 지방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

○ ‘추가 투자(Over-Matching)’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도입

- 기계적인 매칭 비율(예: 국비 70 : 지방비 30)을 고수하는 대신, 지자체가 기준 비율 이상으로 지방비를 매칭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적 예산 증액’ 유도
- 지역별로 재정 규모나 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지역 예산 대비 R&D 비중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자율 R&D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예 : 기본 배분액 증액)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 지방비를 더 많이 투입하는 지역일수록 사업의 성공 의지가 높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배분 공식에 반영

○ 성과 평가에 기반한 예산 이월 허용

- 회기말 낭비성 지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 우수 지역에 한해 예산 이월 권한 부여
- 연차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역(A등급 이상)은 미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역 R&D 적립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대규모 장비 구축 또는 긴급한 기술 수요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회계 모니터링 강화

- 지역 자율 R&D 예산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 지원금과 지방 자체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의무화
- '지역 R&D 추진단'은 매년 '지역 R&D 재정 운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앙 조정협의회 제출

### 3 블록펀딩 예산의 지역별 배분 기준

## □ 제도 시행 초기 균형발전 차원에서 효율성(Efficiency)보다 형평성(Equity) 고려

- 초광역·광역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혁신역량 수준에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 배분기준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자원·역량과 지역 자율 R&D 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분 방안 마련
  - (1안) 현재 자원과 잠재력 기준으로 완전 차등화하여 기대성과 중심으로 배분
    - \* 연구개발 재원의 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자원이 많은 지역에 많이 배분
  - (2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낙후된 지역을 두텁게 지원하여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종자돈 성격을 지역별로 균등 배분
    - \*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분하되 현재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분하는 방식(기본규모 + 추가규모)도 가능
  - (3안) 현재 역량과 격차 축소 수요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을 3개 정도로 등급화하여 차등 배정
    - \* 향후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균등 배분의 한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자원과 잠재력 기준

- 사회·경제적 요인 : 인구, 산업구조 등
- 혁신 자원 규모 : 산·학·연 연구조직 및 인력, 연구 인프라 등

## ◆ 사업의 취지와 목적

- 지역의 '성장엔진', '미래 성장동력' 육성으로 지역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 □ 제도 안정화 시기는 형평성과 성과를 조화시키는 동적 배분 모델 도입 검토

- 기회의 형평성(Equity)보다 성과의 효율성(Efficiency) 비중을 높여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 배분 지표 체계(Indicator)의 구조
  - 배분 기준은 ① 기본 배분 지표(Base Capacity), ② 전략 평가 지표(Strategic Fit), ③ 성과 기반 지표(Performance)의 3대 축으로 구성

○ 생애주기별 가중치 변화 시나리오

〈생애주기별 가중치 변화 시나리오(Dynamic Weighting)〉

구분	1단계 : 도입기('26~'27)	2단계 : 확산기('28~'29)	3단계 : 고도화기('30이후)
정책목표	기반 조성 & 기획 역량 강화	초기 성과 창출 & 옥석 가리기	성과 극대화 & 자립형 생태계
기본 배분 지표 (Wbase)	50%	30%	20%
전략 평가 지표 (Wstrategy)	40%	30%	20%
성과 기반 지표 (Wperf)	10%	40%	60%
배분 특징	“최소한의 Seed Money 보장” 전략 수립 경쟁 유도	“실질적 혁신 활동 독려” 성과 데이터 축적 시작	“잘하는 곳에 더 많이”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주요 메시지	“계획을 잘 세우면 돈을 준다”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한다”	“결과로 증명하라”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원특별자치도(2024), 강원 주축산업 퀀텀 점프 프로젝트(레전드 50+ 2.0) 참여기업 선정계획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22),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
- 국가데이터처(2025), 2023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 국무조정실(2024),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보도자료(3월 27일)
- 국토교통부(2024),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
- 국회입법조사처(2024),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연구개발활동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2022), 2022 지역 R&D사업 공동조사 분석 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5),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23~2027) 2025년도 시행계획
- 교육부(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 연구
- 교육부(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및 운영계획
- 기획재정부(20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대전테크노파크(2025), 중부권 초광역 라이즈(RISE)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및 협력 모델
-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2024), 2024년도 대외협력 R&D 기획지원사업 및 성과분석 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2022), 지역 주도·자율성 강화로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보도자료(12월 26일)
- 산업통상자원부(2023),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보도자료(7월 20일)
- 산업통상자원부(2023),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보도자료(4월 19일)
- 산업통상자원부(2024),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 보도자료(11월 6일)
- 성지은 외(2024),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통합형 지역혁신시스템 구성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5), 2025년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LIPS) 지원사업 운영지침
- 안사회(2025),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미애(2025), 지역 혁신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STEPI 인사이트 제33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성호·정두엽(2025), 지역 R&D 성과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부 R&D 투자 효과성 분석 및 이슈발굴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중소벤처기업부(2024),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추진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2025), ‘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보도자료 (6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하혜영·류영아(2025),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2), 2021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4), 2023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4),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4),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4), 202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향후 과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해외문헌〉

European Commission(2014), NATIONAL/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SATION (RIS3)

European Commission(2019), European Observatory for Clusters and Industrial Change

European Court of Auditors(2025),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 in the EU: Design and implementation (Review 02/2025)

European Union(2016), IMPLEMENTING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

Foray, D. et al.(2018), The Role of Smart Specialisation in the EU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Landscape

Industrial Communities Alliance(2025), The Allocation of Local Growth Funding: Transition from Competition to Formula

Kraków(2021),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of the Małopolska Region 2030

NHS England(2025), Technical Guide to Allocation Formulae and Convergence for 2025 to 2026 Revenue Allocations (Fair Shares Formula)

OECD(2023), TACKLING TECH TALENT GAPS IN SAXONY, GERMANY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2024), Governor Shapiro Highlights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mportance of Robotics and Technology Sectors at Mill 19 in Pittsburgh

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A)(2025), FY 2025 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s (Tech Hubs)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웹사이트〉 (기준날짜 : 2026.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기재부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https://www.distep.re.kr>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https://www.balanceddevelopment.go.kr>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https://www.bistep.re.kr>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통계청(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keis/ko/index.do>

K2Base(과학기술정책 플랫폼), <https://www.k2base.re.kr>

EU Smart Specialisation Platform (S3 Platform), <https://s3platform.jrc.ec.europa.eu>

Japan Cabinet Office (Regional Revitalization),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NEC, <https://www.nec.com/en/global/corporateblog/202502/03.html>

REN21, <https://www.ren21.net/experts-pick-fukushima>

UK Government (Levelling Up & UKSPF),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ew-levelling-up-and-community-investments>





붙임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





붙임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안(국회 발의 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7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조인철 · 김우영 · 이건태  
이정문 · 김태년 · 이개호  
이정현 · 정일영 · 양부남  
민형배 · 최혁진 · 서천호  
정준호 · 박용갑 의원  
(14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다수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 2 -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보유한 산업·인재·기술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연구 성과 또한 지역 내 축적·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도지사는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

- 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시·도지사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요조사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 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자.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차.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

- 4 -

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법률 제 호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3. "지역과학기술"이란 지역 또는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6 -

4.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6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지역공공연구기관”이란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지역과학기술인”이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역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지역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및 초광역권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 8 -

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책임과 역할) ①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지역연구 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연구자를 지원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학기술인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자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체의 육성·지원, 기반 및 환경 조성 등의 정책 추진 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⑨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㉔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및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운용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 12 -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을 사업별·지역별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

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로 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효율화 방안
2.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과학기술 집적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투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 시·도 혹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 수 있다.

②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전략,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의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가 되며, 위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지역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역자체연구

개발사업 공모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준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특정하여 공고하고, 대체할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하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민접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에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및 지원

제16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 기업과 협력연구 및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발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지역거점연구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역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거점연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계획 및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2 -

② 제17조에 따른 지역거점연구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할 시·도의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③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㉕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㉖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은 신규 연구개발 인력 채용 시 관할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

- 26 -

른 연구개발 수요 조사 시 제1항에 따른 정책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  
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  
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정부는 「과  
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  
책을 추진하고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지  
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자료 수집 및 지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과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정책연구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